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5호, 2021. 10. 2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2조의2 신설)

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2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u></p> <p>① <u>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p> <p>② <u>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u></p> <p>③ <u>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u></p> <p>⑤ <u>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u></p>

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